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집행정지 해제 통보 (일동제약(주), 구주제약(주))

1. 관련근거

- 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, 2018.3.26)
- 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562('18.4.16)호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'일동제약(주), 구주제약(주)에서 제기한 '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'의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2019. 8. 29일자로 '모나락시럽 (락톨로오스농축물)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처분을 취소하고, 그 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'라고 판결을 선고함

3. 따라서 일동제약(주)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, 그 외 레녹스정 등 26품목(붙임 참조)에 대해서는 2019. 9.29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- 0. 원고 : 일동제약 주식회사, 구주제약 주식회사
- 0. 집행정지 해제품목 : 레녹스정 68.1mg/1정 등 26품목 (붙임 참조)
- 0. 주문내용
 - 집행정지 결정 :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
 - 판결(서울행정법원):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, 그 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
 - 판결선고 : 2019. 8. 29.
 - ※ 판결선고일이 2019.8.29(목)일 임에 따라 2019.9.29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함

붙임 : 집행정지 해제 품목 (레녹스정 등 아세로정 0.1g/1정 등 75품목) 1부. 끝

